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07
------	------

2022. 3. 3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0일, 김춘례 의원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3. 3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춘례 의원)

1. 제안이유

-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의 명칭을 “최고장인” 으로 변경하여 우수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최고장인에 대한 예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수 숙련기술인의 명칭을 ‘최고장인’ 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 나. 종전의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으로 변경하고, 문구를 조정함(안 제 4조부터 제6조까지).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우수 숙련기술인의 위상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우수 숙련기술인 지원제도와 현황

- 정부는 각종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숙련기술장려법」을 제정해 대한민국명장을 비롯한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과 우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해 1986년부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하여 일시장려금(2천만원), 계속종사장려금(연 215~405만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숙련기술전수자, 이달의 기능한국인, 우수 숙련기술자 등을 매년 선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우수 숙련기술인은 경기도(499명) 다음으로 많은 총 435명(전국 3,409명, 12.8%)이 선정되었고, 대한민국명장(126명),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117명), 산업협장교수(115명) 순으로 선정된 인원이 많음.

< 우수 숙련기술인 제도 및 선정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최초 선정시기(년)	선정인원(서울시)
고용노동부	대한민국명장	1986	663(126)
	우수숙련기술자	2011	543(40)
	숙련기술전수자	1995	136(25)
	기능한국인	2006	178(12)
	산업현장교수	2012	1,282(115)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1967	607(117)
	소 계		3,409(435)
산업통상자원부	품질명장	1991	1,504

※ 자료 :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 2022)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66개 자치단체¹⁾에서 우수 숙련기술인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며,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대한민국명장 제도의 자격조건과 유사한 해당 산업분야 15년 이상 종사와 지역 거주 등의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선정된 숙련기술인에게 기술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또한 숙련기술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2016. 7.) 이후, 서울특별시와 전국 단위의 기능경기대회 등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한 사례가 미미한 상황임.

1) ‘숙련기술인’, ‘최고장인’, ‘명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 검색(국가법령정보센터, 2022.3.28.)

- 이를 개선하고 5대 도시형소공인²⁾ 숙련기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서울시명장 선정 지원 사업 예산(8천만원)을 편성하였음³⁾.

다. ‘최고장인’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 안 제2조 제2호의2는 ‘최고장인’을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인 중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재 ‘최고장인’을 별도로 규정한 법령은 없는 상태로,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으뜸을 뜻하는 ‘최고(最高)’와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장인(匠人)’의 합성어로 볼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제도’를 시행하면서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 ‘명장’ 등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2) 5대 도시형소공인 : 도시형소공인은 높은 노동집약도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지역에 집적특성이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술기업으로, 서울시 도시제조업 중 도시형소공인이 92.9%(53,276개)이며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등 5대 업종이 71%(37,837개)임.

3)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서울시명장 선정 심사(1천 4백만원), 기술교류 및 연수(2천 4백만원), 특강(1천 2백만원), 기술장려금(3천만원, 월50만원 3년 지급) 등을 편성함.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상 우수 숙련기술인 용어 정의 >

용 어	의 미
최고장인 (부산·울산 등)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 기술자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
명장 (강원·광주 등)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 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

- 개정안은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최고장인’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는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음.

라.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으로 변경(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우수 숙련기술인” 용어를 “최고장인”으로 일괄 변경하면서 연관된 자구를 어문 규정에 맞춰 정비하고 있음.
- 이는 기술과 기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간 생산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 숙련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임.
-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숙련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숙련기술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 다만,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지원 등을 위한 사업 등이 미시행 되고 있어 입법화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숙련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기술연마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07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 김춘례 의원(1명)

찬 성 자 : 김소영,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희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송아량,
안광석, 오한아, 이영실,
이정인, 이종환, 장상기,
전병주, 전석기, 최영주,
홍성룡, 황규복 의원(23명)

1. 제안이유

-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의 명칭을 “최고장인”으로 변경하여 우수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최고장인에 대한 예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수 숙련기술인의 명칭을 ‘최고장인’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 나. 종전의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으로 변경하고, 문구를 조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인 중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을 “(최고장인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동일직종”을 “동일직종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상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을 “입상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명칭,”을 “최고장인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자 지원)”을 “(최고장인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을 “최고장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3. (생략)</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① (생략)</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u>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지원계획</u></p> <p>2. ~ 5. (생략)</p> <p>제5조(<u>우수 숙련기술인 선정</u>) ①</p> <p>시장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u>우수 숙련기술인</u>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u>2의2.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숙련기술인 중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최고장인의</u>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u>최고장인의 선정</u>) ① ----- ----- ----- ----- ----- <u>최고장인</u>----- -----.</p>

1.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직종 생산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전국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 생산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명칭, 세부 선정기준,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자 지원) 시장은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우선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 동일직종의 -----

2. ----- 입상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동일직종의 -----

--

② 최고장인의 -----

--.

제6조(최고장인에 대한 지원) -----
----- 최고장인-----

-----.